달천 하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03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 주민의견수렴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시행과관련된 관계행정기관(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가. 계획 수립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경향신문

○ 지방일간지 : 충북일보

○ 정보통산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o 주요 공고·공람 내용

구분	내용			
공 람 기 간	○ 2020년 07월 09일 ~ 2020년 08월 05일(20일간, 토, 일 제외)			
공 람 장 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충청북도청(자연재난과), 충주시(지역개발과), 괴산군(안전건설과), 음성군(안전총괄과), 행정복지센터(충주시: 살미면, 대소원 면,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불정면, 음성군: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정보통신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주민의견 제출기간	○ 2020년 08월 12일(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라. 주민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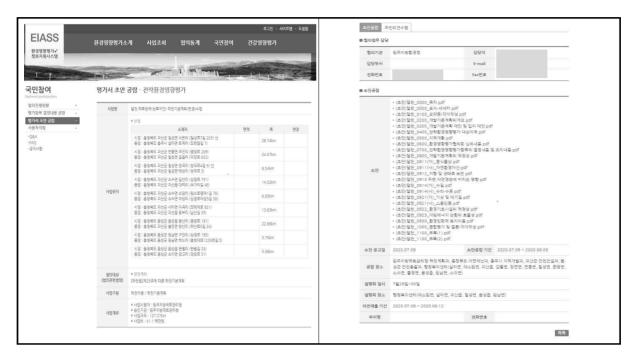
ㅇ 주민설명회 개요

구분	내용
	○ 충주시
	- 2020년 07월 28일(화), 11:00 :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2020년 07월 28일(화), 14:00 : 살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괴산군
주 민 설 명 회	- 2020년 07월 29일(수), 11:00 :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2020년 07월 29일(수), 14:00 : 칠성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음성군
	- 2020년 07월 30일(목), 11:00 :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2020년 07월 30일(목), 14:00 : 원남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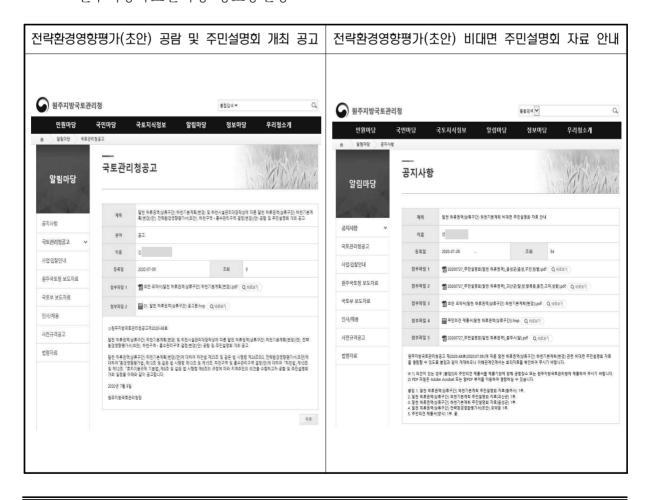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신문공고)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 충주시(대소원면)



- 충주시(실미면)



- 괴산군(괴산읍)



- 괴산군(칠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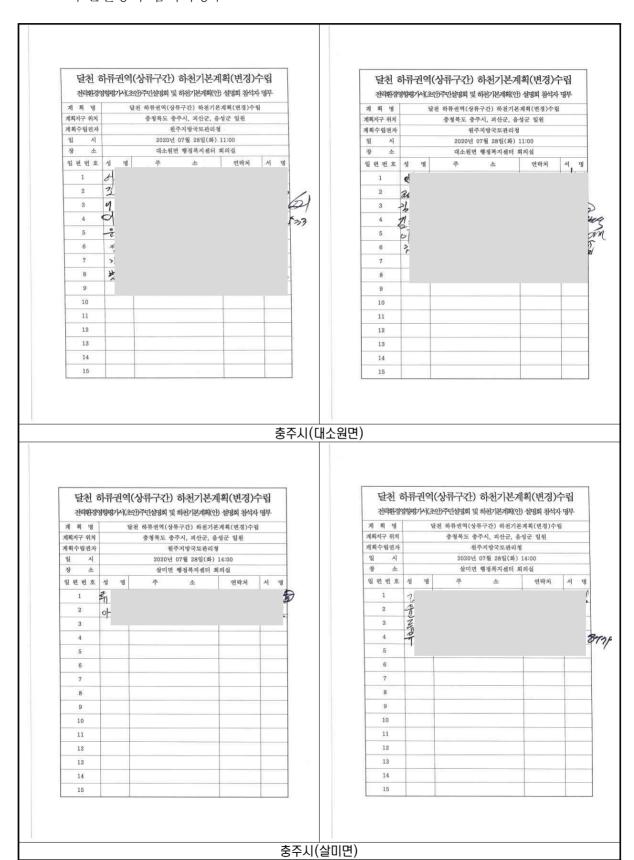
- 음성군(음성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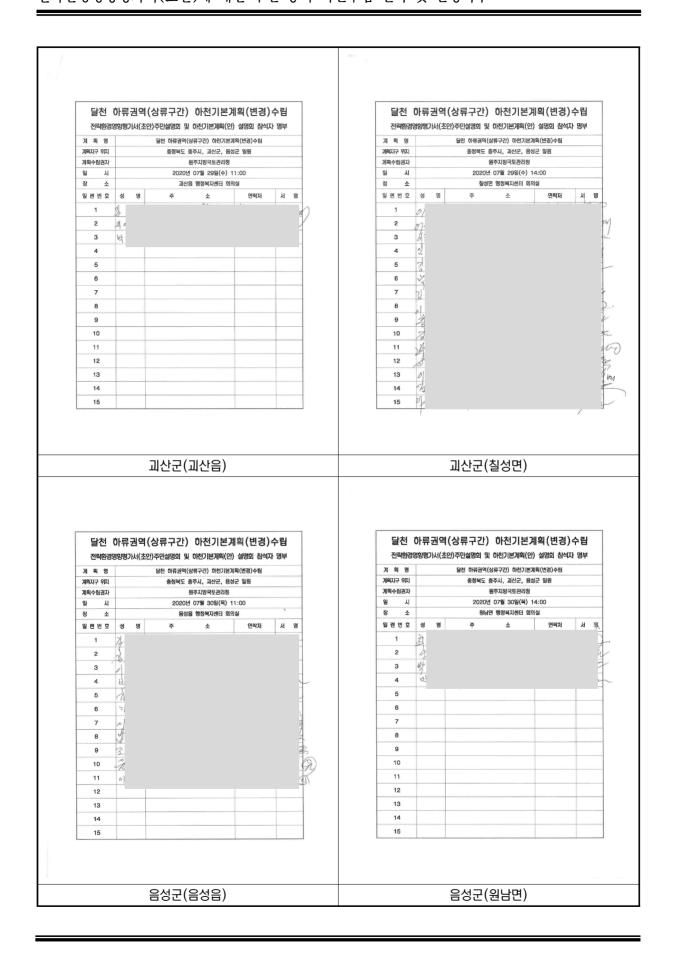


- 음성군(원남면)



○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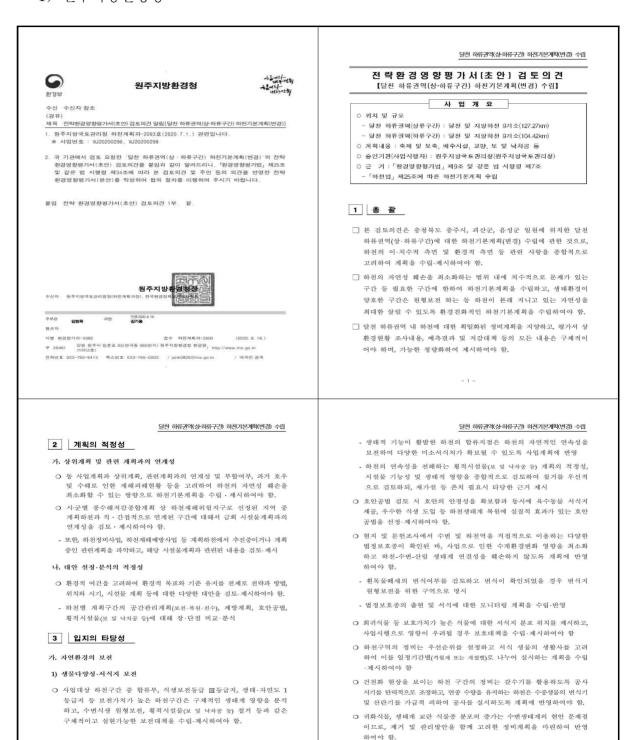


2. 주민의견 수렴결과

가. 주민의견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사본

- 2 -

1) 원주지방화경청



달천 하류권역(상: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의 직범석(석축, 용박 등) 호안공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시설물 설치
 및 규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보·낙차공의 경우 개별 시설몰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체시하되,
 억울과 소의 반복을 통해 낙차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병행 검토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청거하는 방안 검토・계시
- 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특성(유량, 수위, 유속 등), 생태적 현황 (서식 어중 등) 등을 고려하여, 하천 상·하류간 어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형 하도식 어도 등 적용 검토

3)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축제 및 호안, 교량, 낙차공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시행하되,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4) 수환경의 보전

O 단순히 홍수량 크기에 따라 계획하천 전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홍수 방어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 안정성, 하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방 원류에 의한 침수 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과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 4 -

달천 하류권역(상: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도하거나 일률적인 하폭확장은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몰, 토지이용 현황, 지형·지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하여야 함.
- 금회 과업구간에 대해 기수립 당시의 개수계획 및 하도준설, 천수공간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물 계획을 조사·제시하고 각 내용별로 금회 계획과 비교하여 제시
- 설계기준(후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개획 수립 지양
-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
- 제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 소음・전동 예측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되,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전동 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가 예산되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금반 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강원도 자원 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
- 관련계획의 폐기물 관련 감량화 목표, 순환이용률 목표, 세부추진전략

- 5 -

달천 하류권역(상: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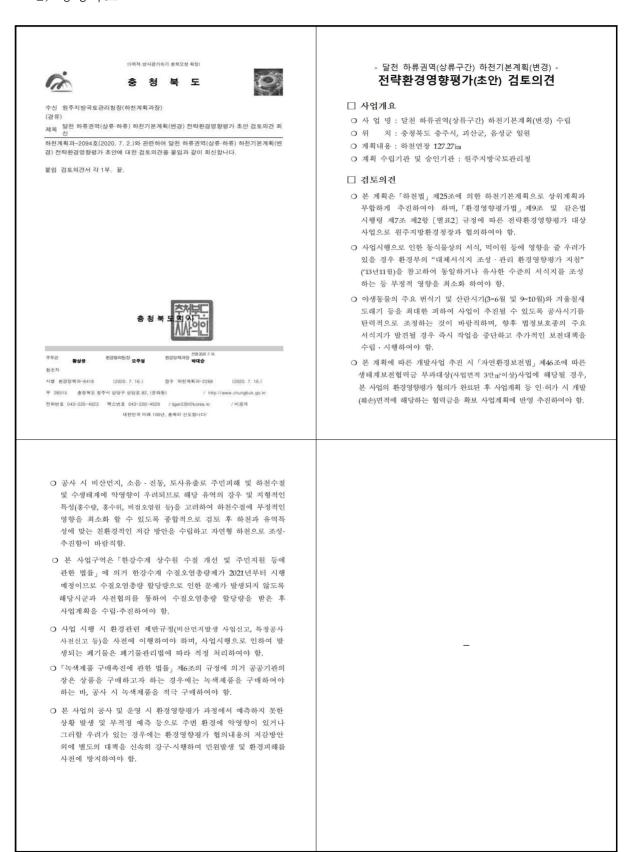
등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4 기타 사항

- 평가서 조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전(본 검토의건 포함)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관련 내용의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도면, 조사표 등)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 규격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17.11.27.)」에 따라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현지조사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계약서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자연생태환경 분야 현지조사표는 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으로 제출 하되, 조사자, 조사 지점, 좌표 등 세부 작성항목 누락 금지
-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참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 참여 등
-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행정 기관의 답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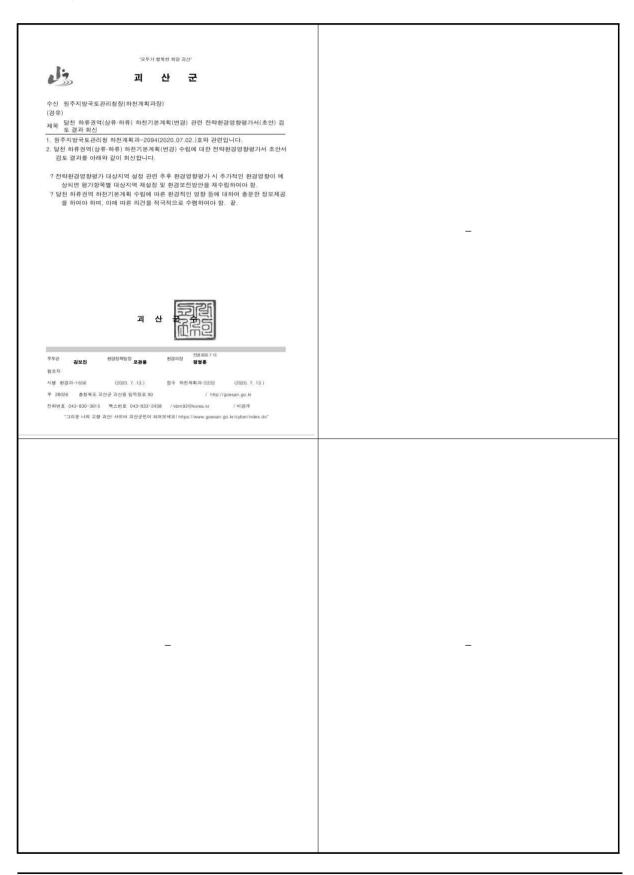
2) 충청북도



3) 충주시



4) 괴산군



5) 음성군





수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경유)

(8 대 제목 달천 하류권역(상류·하류)하천기본계획(변경)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제목 의견 제출

- 귀 기관의 무궁한 및전을 기원합니다.
 「달천 하류권역(상류·하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검토의견서 1부, 끝,





- 달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사업개요

- O 사 업 명 : 달천 하류권역(상류·하류)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O 위 치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일원
- O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계획의 내용 : 하천연장(상류구간 127.27km, 하류구간 104.42km)
 - 음성군 상류구간 31.77km, 하류구간 5.56km

(상류구간)

-1 -1 -d	위치						연장
하천명	기점		중점			(km)	
음성천	음성	음성	용산리	괴산	불정	달천합류점	22.66
구안천	음성	원남	구안리	음성	음성	음성천 합류점	3.75
한번천	음성	음성	한벌리	음성	소이	음성천 합류점	5.36

(하류구간)

*1 *1 *1			2	위치			연장
하천명	전명		기점		종점		
비산천	음성	소이	비산리	충주	주덕	요도천 (지방)합류점	5.56

O 하천시설물 계획

(상류구간)

		제기			시설물		
구분	축제		보축		베수	보/낙	-1.70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시설물	차공	교량
음성천	6	3,144	17	9,308	26	26	28
구안천	2	276	10	3,074	-	5	17
한벌천	5	2,373	9	3,860	-	9	14

(하류구간)

구분	제방			시설물			
	ŝ	: 제	보축		배수	보/낙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시설물	차공	교량
비산천	6	9,077	2	1,005	60	13(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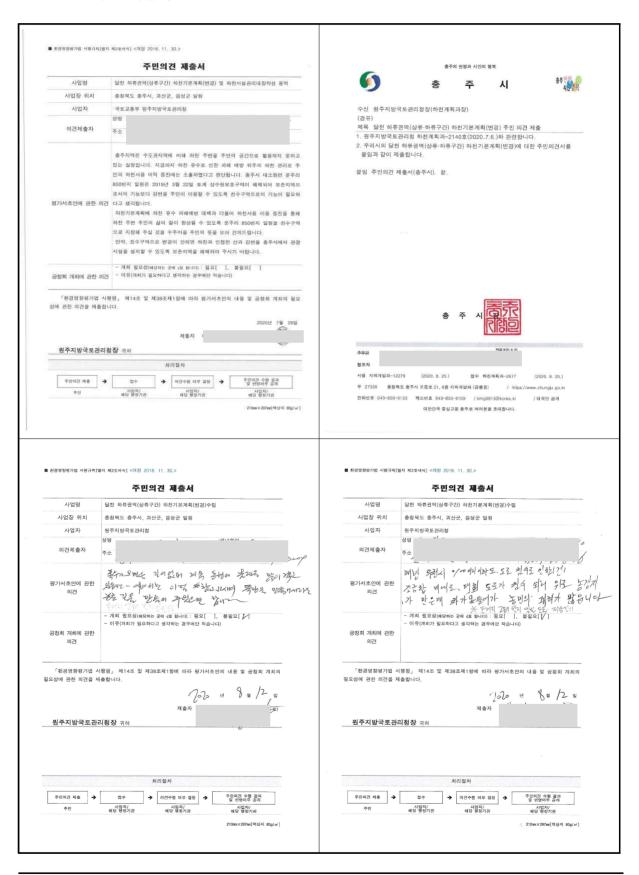
□ 검토의견

- O 본 초안서는「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초 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 함.
- O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 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 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 O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환

경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소음·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마을의 주민생활환 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O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하여야 함.
- O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등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정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 ·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6) 주민의견 제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병	[지 제2호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달천 하류권역(상류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사업장 위치	충청묵도 충주시, 괴신군, 음성군 일원	
사업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선명	
의견제출자	w w	
	WAIZ	
	明达之 思想 经到 上午一个 年世 新起升學 理划是 世間前以中.	
평가서초안에 관한	(計劃구역 전임은 반대형 V 다.	
의견		
	- 개최 필요성(하당하는 것에 √표 합니다) : 필요[], 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_
「환경영향평가법 /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7	시헴텀」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정출합니다.	
2-0, -2, -1	2020년 년월 // 월	
	제출자	
원주지방국토관리		
전무시장식도반대	700 11-	
	처리절차	
	조미의계 수정 건강	
주민의견 제출	- 집수	
주민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에 등 학교이고 210mm×2297mm[백상지 80g/㎡]	
	_	
	_	_

나.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초안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1.총괄	○ 본 검토의견은 충청북도 충주시, 괴 산군, 음성군 일원에 위치한 달천 하 류권역(상·하류구간)에 대한 하천기본 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것으로, 하 천의 이·치수적 측면 및 환경적 측 면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경적 측면 등 관련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 획을 수립하였음.	
		○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 등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살릴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본래 고유의 하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음.	
		○ 달천 하류권역 내 하천에 대한 획일 화된 정비계획을 지양하고, 평가서 상 환경현황 조사내용,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구체적이 어야 하며,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 하여야 함.	정비계획을 지양하였으며, 평 가서에 제시된 내용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량화하여	
	2.계획의 적 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과의 연계성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	를 근거로 피해원인을 파악하 여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되도 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ШП
		○ 시·군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계획 하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구간에 대해서 금회 시설물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또한, 하천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 계획하천에서 추진중이거 나 계획중인 관련계획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물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제시	성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하 여 금회 시설물계획에 반영하 였음. ○ 또한 현재 수립중인 사업시행 계획 및 공사완료구간을 반영 하였음.	
		○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 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시설물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천별 계획구간의 공간관리계획(보 전·복원·친수), 제방계획, 호안 공법, 횡적시설물(보 및 낙차공 등)에 대해 장·단점 비교·분석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제방, 호안 및 횡단시 설물 등은 소류력, 유속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당성 가. 자연환경 의 보전	등급지 등 보전가지가 높은 하천구간 은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을 분석하 고, 수변식생 원형보전, 횡적시설물	산국립공원내 포함되나 행목동 천 내 보 및 낙차공은 존치 계 획을 수립하였음. ○ 횡단시설물 개량시 생태계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 및 낙차공은 현지조사를 통하 여 이용현황 및 기능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 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재 이용 하지 않는 시설물은 철거계획 을 수립함.	

의견제출	THI NAME	+ 0. 7. 5. 0. 7.	반 영 여 부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미반영사유)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1) 생물다양 성 · 서 식 지 보전	○ 호안공법 검토 시 호안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육수동물 서식지 제 공, 우수한 식생 도입 등 하천생태계 복원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호안공법 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양호한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 한 친환경적 호안조성으로 선	
		○ 현지 및 문헌조사에서 수변 및 하천 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법 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사업으로 인 한 수계환경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수변-산림 생태계 연결성을 훼손 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흰목물떼새의 번식여부를 검토하고 번식이 확인되었을 경우 번식지 원 형보전을 위한 구역으로 명시 -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반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번식은 확인되지 않았음. ○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 였음.	
		 ○ 희귀식물 등 보호가치가 높은 식물에 대한 서식지 분포 위치를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우려될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구역의 정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 	계획하천 인근에 위치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보전대책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고 서식 생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이를 일정기간별(격월제 또는 계절별) 로 나누어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제시 하여야 함.	를 설정하고 서식 생물의 생활 사를 고려한 정비 계획을 수립 하겠음.	
		○ 건천화 현상을 보이는 하천 구간의 정비는 갈수기를 활용하도록 공사시기 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중 수량을 유지하는 하천은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기를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갈수기에 공사를 실시하 고 하도내 탁유유발 가능성이	
		○ 귀화식물, 생태계 교란 식물종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 문제점이므 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 생태계 교란 식물종의 제거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ШП
원주지방	1	 ○ 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기존의 직벽식(석축, 옹벽 등) 호안공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함. ○ 해당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수 있도록 하천의 시설물 설치 및 규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함. - 보·낙자공의 경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제시하되, 여울과 소의 반복을 통해 낙자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병행 검토하여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하는 방안 검토·제시 - 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특성(유량, 수위, 유속 등), 생태적 현황(서식 어종 등)등을 고려하여, 하천 상·하류간 어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형하도식 어도 등 적용 검토 	하천계획과 지류의 합류점 형 상, 수충부, 습지 등의 보전 등 기본방향에 따라 가급적 현 상태의 물길과 하상형상을 최 대한 유지토록 계획하였으며, 호안공법은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계획하였음. ○보 및 낙차공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성 여부를 주민탐문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 인 후 개량 및 철거여부를 판 단하여 제시하였음. ○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형(전 면식) 어도를 제시하였음.	
	3) 주변 자 연환경에 미 치는 영향	○ 축제 및 호안, 교량, 낙차공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시행하 되,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 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 야 함.	있도록 경관계획 및 경관시설 물 계획, 색채계획 등을 제시 하였음.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4) 수환경의 보전	○ 단순히 홍수량 크기에 따라 계획하천 전 구간에 동일한 수준의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하천공사 에 소요되는 비용과 치수안정성, 하 천의 자연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 록 제방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 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면적 과 시설물의 중요도 등을 면밀히 검 토한 후,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 간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개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 를 수행하여 개수계획 및 시설 물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 법에 따라 치수사업의 편익(자 산 및 인명피해 절감편익)과 침수피해에 소요되는 지구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경제성 평 가를 실시 적정규모의 개수계	
		 설계기준(홍수량 크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구간의 치수안 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과도한 치수계획 수립 지양 하폭확장 및 하도정비로 인한 건천화·직선화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준설 및 하상 평탄화 계획은 배제 재가설이 계획된 교량 중 연장이 충분한 경우, 여유고와 경간장이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 	 현 하폭과 홍수량규모, 하천설계기준 제시값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폭을 결정하였음. 기수립 대비 금회 개수계획 및 친수지구 지정현황을 작성하여제시하였음. 굴입하도, 산지인 경우는 일률적인 제방계획을 배제하고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으로지정하여 현 자연상태를 최대한유지하도록계획하였음. 대규모 하도준설은 계획하지않았으며, 다만 퇴적이 심하여육역화가 진행되어 통수능확보가불가능한 구간은 일부하상정리를실시하는 것으로계획하였음. 교량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리검토를 통하여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유수소통에지장이 없는 교량은재가설계획에서제외하였음. 	
	다. 생활환경 의 안정성 1) 환경기준 의 부합성	○ 소음·진동 예측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되,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 음·진동 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로 실제 투입되는 장비 등을 산출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적정 저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_ ·	○ 금번 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강원도 자원순환기본 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관련계획의 폐기물 관련 감량화 목 표, 순환이용률 목표, 세부추진전 략 등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폐 기물 처리 계획 수립	기물에 대해 충청북도 자원순 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 획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계 획을 수립하였음. -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폐기물	
	4.기타 사항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 기관의 의견(본 검토의견 포함)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사항을 포 함하여 작성하되, 관련 내용의 반영여 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대한 주민의견 및 관계 행정기 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평가서 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도면, 조사표 등)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 규격으로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17.11.27.)」에 따라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현지조사표",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자연생태환경 분야 현지조사표는 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으로 제출하되, 조사자, 조사 지점, 좌표 등 세부 작성항목 누락 금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음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현황 현지조사표와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를 부록에제시하였음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현지조사표는 수기로 작성하였으며,조사표에 조사자, 조사 지	
		○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한 기술 인력과 평가항목별 참여 내용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 참여 등	력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으 로 작성하였으며,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명단을 작성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충청북도청	1. 검토의견	○ 본 계획은「하천법」제25조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으로 상위계획과 부합하 게 추진하여야 하며,「환경영향평가 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별표2〕규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 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과 부합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본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원주지방 환경청장과 협의를 진행하였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의 서식,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 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13년11 월)을 참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서식, 먹이원 등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 야생동물의 주요 번식기 및 산란시기 (3~6월 및 9~10월)와 겨울철새 도래기 등을 최대한 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 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 후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주요 번식기 및 산란시기를 고 려하여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법적보호종 출현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추가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할	
		○ 본 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면적 3만㎡이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 등 인·허가 시 개발(훼 손)면적에 해당하는 협력금을 확보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여야 함.	의거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 과대상 사업에 한해 생태계보 전협력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충청북도청	1. 검토의견	○ 공사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유 출로 주민피해 및 하천수질 및 수생 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해당 유 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특성(홍수량, 홍수위, 비점오염원 등)을 고려하여 하천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 천과 유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저 감 방안을 수립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추진함이 바람직함.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 을 강구하여 제시하였음. 또한 안정적인 수질개선 및 양호한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한 친환 경적 호안조성을 대안으로 선 정하였음.	
		○ 본 사업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수질오 염총량 할당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당시군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이드라인, 환경부, 2015. 0 6」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 수 립시 각 하천별 오염부하랑을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협의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역개발부하 량 할당 연기를 각 지자체에	
		○ 사업 시행 시 환경관련 제반규정(비 산먼지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 여야 함.	을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 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 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바, 공사 시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하여야 함.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시 녹 색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및 부적정 예측 등으로 주변 환 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 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 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인 영향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T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교
충주시청	1. 검토의견	○ 사업구간 내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이 나 법정보호종 등이 서식할 경우 보 호 대책을 강구 반영하여야 함		
		○ 하천 제외지의 불법 경작사항 등 조 사를 통해 하천 수질 보전방안을 강 구하여야 함		
		○ 오염이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하천구역 에 대하여는 수생식물 식재 등 오염 저감방안을 마련 반영하여야 함		
		○ 과업구간 하류에 위치한 충주 상수원보 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오염저감방안을 강구 반영하여야 함	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강	
		○ 제방, 보 등 인공 구조물 설치를 최 대한 억제하고 하천 흐름의 직강화를 억제하고 어도 등을 설치하여 어류 등의 이동 및 서식에 미지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및 인위적인 하천 흐름 억제 지양, 하천 특성에 맞는 어도	
		○ 하천구역 내 공사 진행시 오탁수로 인한 하류지역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방지 대책을 강 구 반영하여야 함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	
		○ 사업 구간내 보호수 등이 존재할 경우 이식 등 대책을 강구 반영하여야 함	○ 계획하천 인근 보호수 현황조 사 결과 3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지구로부터 약 50~200m 이격되어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보호수에 대한 이식 등 대책방 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충주시청	1. 검토의견	○ 공사과정 중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으로 인한 생태계 및 주변 주민 등에 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을 강구 반영하여야 함	위해 각 항목별 저감대책을 강	
		○ 공사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오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대책을 강구 반영하여야 함		
		○ 2021. 1. 1일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총량협의서 작 성 제출하여야 하며 달천B 단위유역 의 목표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 방안을 강구 반영 하여야 함	이드라인, 환경부, 2015. 0 6」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 수 립시 각 하천별 오염부하량을	
괴산군청	1. 검토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관련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예상되면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재설정 및 환경보전방안을 재수립하여 야 함.	시 환경영향이 예측되는 대상 지역을 재설정할 계획이며, 추	
		○ 달천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 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1
의견제출 기관	평가항목	초 안 검 토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Π⊐
음성군청	1. 검토의견	○ 본 초안서는「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환경영향 평가법」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초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 함.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들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 보하고 주민의견이 있을 시 최대한 반 영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 해 공고·공람을 실시하였으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신고) 절차를 철 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중 소 음·진동, 폐기물,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마을의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을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사 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인근 마을의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항	
		○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 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 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 하여야 함.	인 영향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 및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 도록 하겠음.	
		○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 등 타법 및 타 부서소관 법령 및 정 책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검토·협 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에	

8.2.2 주민 의견(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진술자	주 민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교
	충주시(대소원	면)	
주민1	시 마을 앞까지 하천의 수위가 상승함.	로 결정하였으나, 제방보축계획으로 변경	
주민2 (서면제출)		역주민이 생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친수지구로 지정할 계획임.	
충주시(살미면)			
주민1	인접한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음. 제방보	제방설치 보다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로를 설치하여 이용함이 경제성 등을 고려할	

의견진술자	주 민 의 견	반 영 여 부	비고	
	***************************************	(미반영사유)		
충주시(살미면) 주민2 ○ 폭우가 오면 길이 없어 계속 통행에 불 ○ 토계리 287번지 일원은 굴입하도 형태				
	편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점 참고하시여 뚝방을 만들어서라도 농로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의 하천으로 홍수위까지 하천구역으로 결 정하였으며, 제방설치 보다는 해당 지자 체에서 농로를 설치하여 이용함이 경제성		
주민3 (서면제출)	○ 매년 우천시 100미리 이하도 도로가 침수되고 약간의 비에도 매회 도로가 침수되어 위로 농경지가 많은데 차가 못 들어가 농민의 피해가 많습니다토계리 287번지 일원 도로, 제방건의			
	괴산군(칠성면	1)		
주민1	천 주변 공간을 주차장이나, 주민 체	○ 행목동천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교량 개량 외에 별도의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관광객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친수지구로의 지정을 검토하겠음.		
주민2		○ 향후 실시설계시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주민3	○ 어도를 한쪽으로만 설치하여 물고기가 올 라가지 못하고 있어 어도 추가설치 요청	○ 어도가 없는 취입보의 경우 어도설치를 제시하였으며, 어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심부에 설치함이 타당함. 따 라서 기능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 어 도 설치를 계획하겠음.		
주민4		○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최 소한의 개발계획만 수립하도록 하겠음.		
주민5		○ 합류부는 "달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정비가 완료된 구간으로 일부 제방 보축계획만 수립하여 하상정비 및 준설계 획은 수립하지 않았음.		
주민6	○ 상류지역 하천은 최대한 보전하길 바람.	○ 자연경관이 우수한 상류지역은 치수대책을 최소한으로 수립하였으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축제 및 보축 계획을 제시하였음.		

의견진술자	주 민 의 견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고		
	괴산군(연풍면)				
주민1	○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255-19 주변 하 ○ 검토대상지인 연풍면 갈금리 255-19번지				
(서면제출)	천구역 편입을 반대합니다.	일대는 웃들보 상류측으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축제계획이 필요하나 사유지이고, 현			
		재 펜션이 운영중이므로 제방축조를 지양			
		하고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음성군(읍성읕	Pi)			
주민1	○ 음성천 시내에 위치한 복개천은 하폭이	○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좁아 병목현상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이	으로 복개철거가 타당하나 홍수위 검토결			
	역류하는 것이 아닌지?	과 통수능은 충분하며, 대체 주차장 확			
		보 등 현실을 고려하여 금회 복개철거는			
		제시하지 않았음.			
주민2	○ 용산리 저수지 소하천 합류지점은 하천	○ 소하천 합류부 상류측은 하폭이 협소하여			
	폭이 50m 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축제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하류측은 하천			
	구분되어 개인 재산 소유를 못함. 하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일부 보축계획만			
	선 정비는 언제 완료되는지?	수립함. 하천구역은 심의 완료 후 최종			
		고시할 계획임.			
	음성군(원남면	1)			
주민1	○ 구안천 수질이 굉장히 나쁨. 고속도로	○ 실시설계 수립 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공사 등 주변공사로 토사유출이 많은 하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천임.				
주민2	○ 정비공사는 언제 시행하는지?	○ 정비공사는 기본계획수립 완료 후 예산확			
	- 실시설계 전 주민설명회를 먼저 시행	보 여부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실시설	순위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시			
	계에 반영하기 바람.	행암.			
		- 실시설계시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구안천에 생활하수가 같이 유입되어 수질	○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활하수 등			
	이 악화됨. 또한 원남산업단지에서 발생	오폐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대책			
	되는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뚝방쪽으로	을 수립하여야 함. 하수관로 설치는 지			
	물이 빠지도록 오폐수 관로를 설치 요청	자체 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